「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1. 1(화) 박종욱 의원 외 2인

나. 회부일자 : 2011. 11. 9(수)

다. 상정일자 : 2011. 11. 9(수)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발의의원 대표 박종욱)

- ○「문화재 보호법」또는 「강원도 문화재보호 조례」에 따라 문화 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의 역사적・예술적・학술적 가치가 있 는 자원 및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향토문화유적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적 보호・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- 보호·관리위원회 설치(안제3조~안제9조)

- 기능 : 향토문화유적 지정과 해제, 보호 및 관리 등

- 구성 : 10명 이내(위원장 : 부군수)

- 임기 : 2년

○ 지정 및 해제(안제10조~안제13조)

- 지정 :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유적으로 지정

- 해제 : 지정 가치의 상실, 원형의 변형 또는 손실

- 고시 : 지정·해제 또는 변경할 때에 그 내용을 고시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평창군내에 소재한 향토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보호·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반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.
 - 주요 내용을 보면
 - 「문화재보호법」또는「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문화유적을 대상으로 보호·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유적으로 지정·고시하는 조항을 두었으며
 - 관리자 지정을 비롯해 문화유적의 보호·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 - 본 조례안은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가치가 있으면서 조상의 삶이 담겨있는 우리군의 공동자산인 향토문화유적을 보호·관리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 - 다만, 향후 지정문화재를 비롯한 향토문화유적의 보호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 - 【붙임】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·관리 조례안 1부